

계측하며, 풍속, 온도, 변위에서 과다변화가 발생하면 계측시스템이 자가반응하여 계측시간을 조정하고, 상시 및 이상감지 데이터를 필터링 및 베이지안 통계기법에 의한 장애발생 변위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교량받침의 거동한계와 정상작동 여부를 판단 평가·판단하는 기술임.

<범위>

교량받침을 변위센서와 저전력으로 작동하는 이동식 센서노드 및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무선으로 실시간 계측하고, 서버에서 계측된 데이터에 필터링 및 베이지안 기법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풍속, 온도, 과다변위 발생검토 및 경향을 판단하여 IoT 계측장치가 계측주기를 자동조정 함으로서 정밀하게 교량받침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1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0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내경엔지니어링(유병호) ② (주)서영엔지니어링(김종훈)

나. 전화번호 : ① 02-575-7184 ② 02-6915-7000

####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03호

3. 명칭 : 굽힘철근과 탄성소켓을 주요소로 하는 단위모듈러장치를 이용한 강관/PHC 말뚝머리 보강 공법

####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모멘트팔길이 넓어 저항휨강도가 큰 굽힘보강철근과 힘 균등 전달과 저항이 높은 미끄럼방지턱과 탄성소켓의 장치 요소를 하나의 Unit로 일체 제작한 경량 단위 표준모듈러장치나,

지압과 정착능력이 높은 앵카연결재를 상기 표준모듈러장치에 일체 제작한 경량 단위 특수모듈러 장치를 단순히 말뚝에 삽입하거나 걸침으로서 조립된 케이지에 띠철근을 조립하여 강결일체 보강체를 구성하는 강관/PHC 말뚝머리 보강에 적용하는 것과, PHC 말뚝머리에 후프압축력이 도입된 스틸자켓을 채워 구속응력과 강도 증진을 하도록 한 굽힘보강철근과 미끄럼방지턱부착탄성소켓 단위 모듈러장치를 이용한 강관/PHC 말뚝머리 강결일체 보강공법에 대한 기술이다.

<범위>

굽힘보강철근에 미끄럼방지턱, 탄성소켓, 앵카연결재 및 띠철근을 일체로 제작한 단위모듈러장치를 강관/PHC 말뚝에 삽입 및 걸침으로서 현장에서 조립되는 말뚝머리 보강공법 또는 PHC 말뚝 머리에 스틸자켓을 설치하여 후프압축력을 도입하는 공법

5. 보호기간 : 2013.07.02. ~ 2021.07.01.(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24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의 임차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873호, 2021. 1. 5. 공포, 2021. 4. 6.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 유치지원 확대(안 제29조의2)

국제기구 유치시 부지 매입 및 건축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임차료·운영비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